

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-23호

「은행업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6월 28일
금융위원회

1. 개정 이유

신용카드 업무를 운영하는 은행이 고위험대출에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여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

2. 주요 내용

-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은 카드론 대출잔액을 보유한 차주의 카드론 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분의 30 가산하여 적립 (규정안 제29조)

3. 기타 참고사항

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fsc.go.kr>) '정보마당-법령정보-고시/공고/훈령'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